

# (사)한국출판인회의 정관 전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”(이하 “본 법인”)라 한다.

**제2조(소재지)**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**제3조(목적)** 본 법인은 출판의 자유를 신장시키고, 출판의 문화적 진흥과 산업적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4조(사업)

1.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- ① 출판문화의 위상 제고와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
- ②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사업
- ③ 독서 인구의 증대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
- ④ 출판인력 양성과 출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
- ⑤ 출판유통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사업
- ⑥ 출판경영의 합리화 및 과학화를 위한 사업
- ⑦ 출판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 출판의 발전을 위한 사업
- ⑧ 국내외 출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, 협력 사업
- ⑨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도서 발간 사업
- ⑩ 회원의 공동 복리 증진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
- ⑪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사업
- ⑫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2. 본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2장 회원

**제5조(자격 및 가입절차)**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출판사 대표로서 소정의 입회서류 제출과 실행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**제6조(회원의 권리)**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와 각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
**제7조(회원의 의무)**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
1.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
3. 회비 납부의 의무
4. 출판사 소재지, 대표 등 변경사항의 통보

**제8조(회비)** 본 법인의 회원은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회비의 액수 및 납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**제9조(탈퇴의 자유·재입회·경고·제명)**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, 회원이 자격상실, 경고 및 제명, 재입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 자격상실 및 재입회: 회원이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 결의로써 제명되면 자격을 상실한다. 이 경우 입회금과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단,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후에 재가입 원서를 낼 수 있다.
2. 경고 및 제명: 본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본 법인의 품위와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 결의로써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
## 제3장 임원과 자문위원

**제10조(임원)**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3인
3. 이사 70인(회장, 부회장 포함) 이내
4. 감사 2인

**제11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)**

- ① 회장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출판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.
- ③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과 총회에서 뽑은 6인의 이사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.
- ④ 실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 인준을 받는다.
- 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비회원으로서 감사에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적자격을 갖춘 전문가이어야 한다.
- ⑥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감사는 감사 상호간,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.
- ⑦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 결의로써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.

**제12조(선거관리)** 임원 및 이사선임위원의 선거방법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**제13조(회장의 권능)**

-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의장을 맡는다.
- ② 직전 회장은 본 법인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.

**제14조(부회장의 권능)**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에 회장 또는 이사회에 지명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5조(이사 및 실행이사의 권능)**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제반 업무에 대해 심의·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 실행이사는 본 법인의 상설 의사집행기구인 실행이사회를 통해 본 법인의 제반 업무를 심의·의결, 집행하되 각 분과 위원회의 장을 겸임한다.

**제16조(감사의 권능)** 감사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.
2.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3. 위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·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4. 위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5.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·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·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17조(자문위원의 권능)** 회장은 이사회에의 협의를 거쳐 출판계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 및 중견 회원 2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.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.

## 제4장 총회

**제18조(구성)**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
### 제19조(소집)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-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또는 정관 제16조 4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한다. 단, 긴급한 때는 구두 혹은 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**제20조(정족수)**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**제21조(총회의 의결사항)**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사업계획안 승인
4.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5.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
**제22조(총회의결의 제척사항)**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## 제5장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

**제23조(구성)** 이사회는 회장·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24조(소집)**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여 회장이 주재한다.

1. 년 1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제16조 4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25조(의결 정족수)** 이사회와 실행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6조(이사회의 권능)**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이행하거나 심의,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2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
3. 예산·결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, 부설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6. 회원 입회 절차 및 회비에 관한 규정
7. 사무국 조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
8.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
9. 기타 중요사항

**제27조(실행이사회의 권능)** 실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전조(제26조)의 사항을 집행하며, 기타 일반 사무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, 집행한다.

**제28조(실행이사회의 소집)** 실행이사회는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며,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6장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

**제29조(위원회 및 특별위원회)**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무위원회, 교육위원회, 정책기획위원회, 독서진흥위원회, 유통대책위원회, 정보화사업위원회, 재정위원회, 도서관대책위원회, 국제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직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**제30조(부설기구)**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출판아카데미를 포함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각 지역에 본 법인의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. 부설기구의 구성과 활동,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1. 서울북인스티튜트(sbi)

## 제7장 재산 및 회계

**제31조(재산)**

-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보통재산은 기본재산

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③ 기본재산의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, 자금을 차입하고자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.

**제32조(수익금)** 본 법인의 수익금은 회비, 특별회비, 기부금,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 단, 수익금 중 기부금은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정기총회 개최 후, kopus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**제33조(회계 연도 및 감사)**

①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 감사는 본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와 별도로 기부금에 의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.

**제34조(예산편성)** 본 법인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**제35조(보수)**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사업의 실무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본 법인의 사무국 직원에 관한 보수는 실행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 **제8장 사무국**

### **제36조(사무국)**

① 본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추진사업에 필요한 인원수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. 사무국장은 총무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실행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 **제9장 보 칙**

**제37조(법인의 해산)**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또는 실행이사회,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본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**제39조(정관의 변경)**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또는 실행이사회,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

하며,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.

#### 제40조((사업실적 등의 보고) 조항 삭제

제41조(운영규칙)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된 날(2000.8.7)로부터 시행한다. 앞으로 개정된 정관도 이와 같다.
- ② (정관 개정) 본 법인의 제2차 정기총회(2001.2.26)에서 위임받아 2001년 5월 29일 본 법인의 제45차 실행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관광부로 법인 이관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③ (제2차 정관 개정) 본 법인의 제6차 정기총회(2005.2.3.)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④ (제3차 정관 개정) 본 법인의 2008년 1차 임시총회(2008.9.2.)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⑤ (제4차 정관 개정) 본 법인의 2009년 제10차 정기총회(2009.2.20)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⑥ (제5차 정관 개정) 본 법인의 2010년 제11차 정기총회(2010.2.23)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⑦ (제6차 정관 개정) 본 법인의 2018년 제19차 정기총회(2018.2.27)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